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내지 제26조)
- 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85㎡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11조)
-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14조)
- 라.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

3.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7조·제9조·제180조·제181조·제188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1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경상북도 재정과-1703(2005. 1.27)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 경상북도 재정과-6028(2005. 4.28)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제2항제1호** 본문 후단중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제1호·제3호** 및 **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제1항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1000분의3을”을 “1000분의1.5를”로 한다.

제15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2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으로 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의3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하고, 제1항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하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하며 “대한 재산세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8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를 “재산세의”로 한다.

제22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 본문 및 각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각각 한다.

제24조 본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동항 제1호·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며,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각각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14조의 2”를 “제114조의3”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6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재산세”로 한다.

제28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로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3조를 제32조로 하여 제목 및 본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각각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제7조제1호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동조제2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동조제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동조제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동조제7호 “과학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제8조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농어

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동항**제2호**“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동항**제3호**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제15조의4**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7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7장 보칙 **제30조** 및 **제31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 ② (생략)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u>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u>) 2.~4. (생략)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 -----<u>재산세</u>----- ----- ----- ----- <u>재산세</u>-----. ② (현행과 같음) 1. ----- ----- -----(<u>「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개정 -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 됨에 따른 문구 수정 단서조항 명확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u>주거용 부동산</u>(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u>축사용 부동산</u>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u>주택</u>(----- -----) -----<u>재산세</u>-----	지방세법 개정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문구정리 - 종합토지세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 「의료법」----- -----<u>재산세</u>-----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u>-----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령제명 띄어쓰기 종합토지세 삭제 지방세법 개정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과세에 따른 조문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건축물로서</u>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u>문화재보호법</u>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u>문화재보호법</u>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u>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u>	-----<u>재산세</u>----- -----. 1. 「<u>문화재보호법</u>」----- ----- ----- ----- 2. -----<u>건축물 및 주택으로서</u>----- ----- ----- ----- 3. 「<u>문화재보호법</u>」----- ----- ----- ②「<u>문화재보호법</u>」-----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u>주택</u> -----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u>주택</u> ----- ----- <u>재산세</u>-----	지방세법 개정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문구정리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 1.~3. (생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	임대주택 감면확대 - 서민 및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함 - 임대주택 감면을 건설임대(제1항)와 매입임대로(제2항)로 구분하고 감면을 확대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3. <u>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종합토지세삭제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 」----- -----「 <u>농산물가공업육성법</u> 」-----「 <u>수산물 품질관리법</u> 」-----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 2. (생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u>철도법</u>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u>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제9조 ----- ----- ----- ----- ----- -----.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 「<u>철도법</u>」----- ----- ----- <u>재산세</u>----- -----. ②「<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	인용법률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 -----「지방세법」----- ----- -----.	인용법을 개정 에 따른 조문 정비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 ----- -----재산세----- -----.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 -----재산세----- -----. 2. 시장정비사업시행----- ----- 대하여는 ----- ----- -----.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 ----- ----- -----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u>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u>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u>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u>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u>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 -----<u>「지방세법」</u>----- ----- -----<u>재산세</u>----- ----- ----- ----- ----- -----.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u>「지역신용보증재단법」</u>----- ----- ----- ----- -----<u>「지방세법」</u>-----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u> 경감하 고 ----- ----- -----.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u>「지방세법」</u>----- ----- -----	지방세법 개정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과세함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u>화물유통촉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u>전쟁기념사업회법</u>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u>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u>조세특례제한법</u>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u>재산세</u> ----- ----- ----- -----.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u>화물유통촉진법</u>」 ----- ----- ----- ----- ----- <u>재산세의</u> ----- -----.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u>전쟁기념사업회법</u>」 ----- ----- ----- ----- ----- ----- ----- <u>재산세</u> ----- ----- ----- ----- -----.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u>조세특례제한법</u>」 -----	종합토지세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1. 「조세특례제한법」----- ----- ----- <u>재산세</u> ----- ----- -----. 2. 「조세특례제한법」 ----- ----- ----- <u>재산세</u> ----- ----- -----. 3. 「조세특례제한법」 ----- ----- ----- -----<u>재산세</u> ----- ----- -----. 4. 「조세특례제한법」 ----- ----- ----- ----- <u>재산세</u> ----- ----- -----.	종합토지세삭제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 ----- <u>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u> <u>경감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종합토지세 삭제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 ----- ----- ----- ----- ----- <u>재산세</u> ----- ----- ----- -----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u>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시행규칙</u>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 ----- ----- -----. 1. 「<u>수도권정비계획법</u>」 ----- ----- ----- ---- <u>재산세</u>----- ----- ----- -----. 2. 「<u>수도권정비계획법</u>」----- ----- ----- ----- <u>재산세</u> ----- ----- ----- -----. ②----- ----- ----- ----- ---- 「<u>지방세법 시행규칙</u>」 제114조의3----- ----- ----- -----「<u>지방세법 시행규칙</u>」----- ----- -----<u>재산세</u>----- -----	지방세법 개정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제7장 보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u>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u>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u>종합토지세</u>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 ----- ----- ----- ----- <u>5년간 재산세</u> ----- -----. 제7장 보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 ----- <u>토지에 대한 재산세의</u>----- ----- ----- ----- -----.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u>토지에 대한 재산세</u>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종합토지세</u> 삭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른 조문 개정 〃 조문 순서를 법령의 일반적 형식에 맞게 조정

○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

제18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구역의 선정·변경·공고 및 지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